

#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월18일) 상정
-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월18일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)

### □ 개정이유

-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제명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조정함
-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조정함(안 제2조, 제4조 및 제6조)
- 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신설함(안 제2조의2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84 호
의결 년월일	2003. 1. 21 (제102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-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있어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. 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제명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및운영조례로 조정함.
- 나.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조정함(안 제2조, 제4조 및 제6조)
- 다.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신설함.(안 제2조의2)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부천시정신보건센터(이하 “정신보건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제2조·제4조 및 제6조중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정신건강증진센터”로 한다.

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 2(위치)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원미구보건소내에 둔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시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.

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이용료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<u>정신보건센터</u>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6조(이용료 면제) ..... .....<u>정신건강증진센터</u>..... ....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